

안전진단전문기관

■ 업무내용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의 물리적·기능적 위험요인 과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등록기준

1. 자본금

사업분야	자본금	※
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증빙서류 필요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증빙서류 필요
건축 (건축분야)	1억원 이상	
종합	4억원 이상	

2. 기술능력

사업분야	기술능력
토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토목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건축분야)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2명 이상 (건축분야 50%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분야 6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종합	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이상 8명 이상 (토목, 건축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토목, 건축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11명 이상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장비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라이트부착형)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포함)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 μ s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mm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각도·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교량 및 터널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mm 이상일 것)
수리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항만분야	유속계 (0.1m/sec ~ 3m/sec)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35일 이내 소요